

자산보관·관리보고서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-B
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-C1(51038)
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-I
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-A2
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-E
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-C2
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-C3
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-C4
 알리안츠 Best 중소형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-C5
 나. 분류 : 증권 집합투자기구-주식형
 다. 보관·관리기간 : 2012.05.02 ~ 2013.05.01
 라. 집합투자업자 :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(주)
 마.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: 현대증권, 한화투자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하나대투증권 외 6개사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-11-23	집합투자계약 변경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퇴직연금 클래스 추가 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퇴직연금 클래스 추가 제39조(보수) 퇴직연금 클래스 추가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10. Class C(P)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에 한하여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10. Class C(P) 수익증권 제39조(보수) 10. Class C(P)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6.50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7.50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
2012-11-23	집합투자계약 변경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③6호신설 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⑨ ...행생락...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통하여 ... 이하생략.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③6.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⑨ ...행생락...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... 이하생략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2012-11-23	신규	박찬우		2109001262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교체·해임에 관한 사항

(단위 : 원)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삼정회계법인	12개월	3,300,000원	서면계약	2013-05-01	삼정회계법인	12개월	3,300,000원	서면계약

7.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(주)의 준법감사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투자신탁별 자산배분내역의 적정성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 신탁업자명 : (주)하나은행 투자신탁부 전화번호 : 02)3788-5102
-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